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변은진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 목 차 -

- I. 머리말
- II.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
 - 1. 태형령 부활과 3.1운동 전후 분위기
 - 2. 태형령 폐지 이후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
- III. 한글 신문을 통한 비판 여론의 고조
- IV.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대응과 성격
 - 1.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와 대응
 - 2. 고문치사 사건의 양상과 성격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 ‘문화통치기’에 ‘보통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 특히 ‘고문치사’는 현존 체제에 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태형령」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의 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치사 사건의 빈발은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여론을 불러일으켰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 의식과 폭력성 등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확인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驗) 및 시신 인도 / 고소(피해자측) / 탄원서 제출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문치사자의 연령은 20~30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발생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문치사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유족이 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 제기, 탄원서 제출, 주재소 습격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휴직, 감봉, 전근, 파면, 恩給 취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총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 ‘범죄’ 혐의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나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도 당시 일제 경찰이 조선인 일반을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고문치사, 고문, 문화통치, 태형령, 보통경찰, 절도죄, 일제강점기

I. 머리말

국가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되던 시기가 있었다.¹⁾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전시 총동원과 민족 말살로 점철된 일제강점 말기 등이

1) 일반적으로 ‘국가 폭력’이란 “국가의 다양한 폭력적 기구가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윤민재, 「한국의 의문사 현황과 해결 방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치사회학적 해법 모색」, 『민주평화연구』 3권 1호,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20, 7쪽)이라고 할 때, 전체주의 체제와 같이 국가가 너무나 억압적이어서 일상적으로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경우이다.

그러하다. 어쩌면 일제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대 무단통치기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일제강점기에 현실국가로서 ‘일본국’의 통치가 그나마 일반적 수준에서 작동되던 시기는 ‘문화통치기’로 일컬어진 1920년대부터 1937년 7월 전시체제기로 돌입하기 전까지이다. 하지만 ‘문화통치기’에도 일제 당국에 의한 ‘국가 폭력’은 일상적이었고, 그 상징적인 예가 ‘보통경찰’로 일컬어지던 공권력에 의한 고문과 폭행의 만연이었다. 이렇게 빈번한 고문은 ‘고문치사’로까지 확대된 경우도 많았다. 이는 돌발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예정’된 것이었다. 이 경우 개별 인간들은 매우 황망해 하고 ‘문화통치’를 표방하던 당국은 몹시 당혹해했다.

사실상 ‘拷問’²⁾이라는 행위는 적어도 국가가 형성된 이래의 인류에게는 초역사적인 것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범죄와 형벌은 존재했고, 대부분 나라에서 관습적으로 고문을 인정해왔다. 근대 이전까지 고문은 “진실을 억지로 손에 넣기 위한 신체적 폭력”으로서 “진실을 알아내기 위한 위험한 수단”이었다. 이때 심문당하는 신체는 ‘고통, 쌍방의 대결, 진실’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작용하는 ‘징벌의 적용 지점이자 진실 강요의 장소’였다. 복잡한 형벌구조의 틀 속에 위치한 고문은 “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규칙적으로 집행”되는 ‘엄격한 사법적 행위’였다. 이처럼 “근대적인 심문의 무절제한 고문”과 달리, 고전주의 시대의 고문은 잔인하지만 야만적인 것은 아니었다.³⁾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自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⁴⁾ 이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문이 합법화되었던 것이다.

유교적 원리에 따라 신체 보존에 대한 사회적 의무가 작동하던 전

2) 拷問은 주로 일본 도쿠가와 시대에 쓰이던 용어이며, 조선에서는 唐律에 따른 拷訊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었다.

3)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22(개정 2판 4쇄), 88-94쪽.

4) 이에 대해 푸코는 “형법상의 증거 조사는 피고인 없이 진실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소송 절차는, 엄격한 권리로서 自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도 필연적으로 자백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자백은 극히 확실한 증거를 구성하므로, 다른 증거를 추가할 필요도 없고, 힘들고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각종 증거의 조합을 만들 필요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미셸 푸코, 위의 책, 2022, 85-86쪽).

근대 조선 사회도 서양 사회와 다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주로 拷訊 또는 刑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역시 야만의 상징은 아니었다.⁵⁾ 고신이란 “조선시대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목격자(증인)의 자백, 기타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정한 법적 규제와 제한 하에 실시하는 강제수단”이라고 이해된다. 70세 이상과 15세 이하는 고신할 수 없었고, 이들은 자백 없이 3인 이상의 증인만으로도 혐의 인정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했다.⁶⁾ 고신은 임금이나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집행하도록 했다. 조선후기의 推鞠은 일반적으로 ‘심문-진술-형신-재심문-자백(結案)-照律-처형’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자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신은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 자백은 결안을 통해 최종 확인되었다.⁷⁾ 그런데 당시에는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안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신 또는 가족의 선택에 의해 독살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⁸⁾ 이처럼 당대 사람들에게 고신은 당연한 법적 절차로 받아들여졌는데, 실학자들의 개혁안에서도 고신의 폐지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렇게 고신은 한말까지 계속 합법으로 남아있다가 1908년 『형법대전』이 대폭 개정될 때 그 근거 규정이 완전히 삭제되었다.⁹⁾

개인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근대로의 이행은 당연히 출발부터 고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불러일으켰다. 죄형법정주의의 창시자로서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카리아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유죄가 아니다.”, “많은 면에서 야만적이었던 로마인

5) 오항녕, 「조선시대 추안(推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中國語文論譯總刊』 3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3, 80-82쪽. 조선시대 추국청에서도 “고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캐내려는 수단”은 아니었고, “濫刑이나 혹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王政에서 사법적 신체형은 정치적인 행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6) 심희기, 『한국법제사 강의』, 삼영사, 1997, 221쪽, 233-234쪽.

7)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211-212쪽.

8) 조운선, 「영조 6년(庚戌年) 謀叛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42, 朝鮮時代史學會, 2007, 224-225쪽;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에 실패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朝鮮時代史學報』 48, 朝鮮時代史學會, 2009, 233-234쪽. 죄를 시인하기 전에 물고되면 가족들이 연좌를 면할 수 있었다.

9) 심희기, 앞의 책, 1997, 239쪽.

들조차 이 잔혹한 미덕을 노예들에게만 적용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볼테르 역시 법이 유죄를 판결하기 전에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형벌이 가해지는 상황에 대해 “이래도 되는가?”라며 베카리아를 지지했다.¹⁰⁾ 최종 판결 이전에 가해지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고문은 늘 딜레마였고,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 범위와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¹¹⁾

근대 국민국가의 시대로 접어들어면서 고문은 법적으로 폐지되어갔고, 일본도 1879년 10월 공식적으로 고문제도를 폐지했다.¹²⁾ 하지만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사상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고문이 지속되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처럼 고문, 특히 ‘고문치사’라 하면 현존 체제에 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겠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3.1운동이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른 이후 펼쳐진 ‘문화통치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도 이 시기는 근대적인 민족운동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그나마 열린 공간이 확보된 속에서 조선인도 언론 등을 통해 극단화된 국가 폭력을 공유하고 여론화할 수 있던 시기였다. 특히 ‘문화통치’로의 전환의 상징이 ‘笞刑 제도의 폐지’로 선전되던 상황에서 고문의 지속, 특히 고문치사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한 일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사회에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笞杖刑은 ‘유죄의 확장’으로 주어진 보편적 형벌의 한 형태였지만, 이의 금지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의 금지로 받아들여졌다. 게다가 일본의 근대 형법에는 고문 금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태형령」의 폐지는 명실상부하게 신체형과 고문이 모두 금지된 것으로 받

10)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볼테르 해설, 김용준 옮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2022, 74-75쪽 및 227쪽. 1764년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베카리아의 책은 곧바로 금서가 되었으나, 18세기 말까지 일본어를 포함해 무려 22개국 언어로 번역되었다.

11) 재판관의 재량에 맡긴다거나 3회까지만 허용하는 등 나라마다 달랐다. 18세기 말 스페인의 구스타프 3세가 최초로 고문의 법적 폐지를 단행하였다.

12) 자세한 내용은 手塚豊, 「明治初年の拷問制度:その廢止過程の一研究」, 『法學研究:法律・政治・社會』 25, 慶應義塾大學 法學研究會, 1952, 230-232쪽 참조.

아들였다. 하지만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는 여전히 고문치사 사건이 빈발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져 간 상황이었다.

이 글은 이렇게 ‘문화통치’라는 미명을 누리던 시기에 ‘보통경찰’에 의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반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일제강점기의 ‘고문치사’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항일운동 사건 관련 재판¹³⁾ 혹은 법조인의 항일변론투쟁을 다루면서¹⁴⁾ ‘고문’ 문제를 정리하는 정도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당대에 너무나 일상화된 다수의 ‘고문 사건’이 아니라, 이로 인해 ‘예정’된 ‘고문치사 사건’만을 좁혀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문화통치’를 내걸고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이 「조선태형령」을 공식 폐지한 1920년 4월 1일부터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이에 접근한다.¹⁵⁾ 이를 통해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분명히 하는 한편, 半자본주의적이고 半봉건적인 식민지 사회를 살아가던 평범한 조선인이 개인의 생명과 신체, 국가권력의 폭력 등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갔는지 등의 성격을 검토할 것이다.

II.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

1. 태형령 부활과 3.1운동 전후 분위기

조선에서 형벌제도의 근대적 전환에 대한 논의는 갑오개혁의 일환

13) ‘105인 사건(1911)’이나 ‘제1·2차 조선공산당 사건(101인 사건, 1925~28)’이 대표적인데, 전자는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한성대학교출판부, 2012)의 3장 1절을, 후자는 김국화,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20)의 2장 3절 및 3장 4절 참조.

14) 임상혁, 「일제강점기 사법관료에 대한 일연구 - 검사 최대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한인섭, 「이인 변호사의 항일 변론 투쟁과 수난」,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등.

15)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중앙일보』, 『조선중앙일보』 등을 활용했다.

인 『刑律名例』(1896.4)에서 일단락되어 태장형을 태형으로 통폐합하여 존속시켰다. 그 이유는 “무지하고 가난한 자는 벌금을 낼 능력이 없고 자유형에 대해서는 오히려 속식이 해결됨을 기뻐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효과적인 형벌은 태형뿐”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인의 무지와 가난이 일본식의 ‘근대적 형법’을 전면 도입하지 못하는 근거로 거론되었다. 이는 1905년 4월 『형법대전』까지도 존속되다가,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 法部 주도로 1907년 6월 완성된 「형법대전개정초안」에서 태형은 모두 벌금형으로 대체할 것이 제안되었다.¹⁶⁾ 하지만 이는 통감부에 의해 보류되었다가, 1908년 7월 『형법대전』의 제2차 개정 때 와서야 고문이나 태형 등의 근거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다.

그런데 조선총독부는 1912년 3월 18일 제령 제13호로 「조선탈형령」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당시 일제는 이른바 「時勢民度論」을 근거로 타이완이나 관동주 등의 식민지역에서 태형제도를 시행했는데,¹⁷⁾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태형’은 원래 형이 확정된 후 형벌의 일종이었지만, 「태형령」의 부활은 형이 확정되기 전 자백 과정에서의 폭력 행사를 공공연하게 묵인하도록 했다. 그리고 조선사회 내에서도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당시 태형 처벌의 대상이 된 범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들’, 예컨대 도박, 「삼림령」 위반, 풍기문란, 도로취체규칙 위반, 위생 관계 등 輕犯罪의 비중이 높았던 만큼, 고문 역시 경범을 저지른 인물들에게 일상적으로 자행되었다. 그리고 1917년 말에서 1918년 초 사이에는 태형의 집행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태형령 폐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다.¹⁸⁾

이처럼 1910년대 고문의 빈발은 ‘무단통치기 태형령의 상징성’과 관

16)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191~193쪽.

17) 타이완의 「태형령」(1904)는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고토 신페이(後藤新平)가 착안한 것이었으며, 1908년에는 관동주에서도 시행되었다. 일본 내에서 태형은 폐지된 지 오래였고 일본정부는 가능한 한 일본의 제도를 식민지에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기 때문에 당시 반대론이 높았다고 한다(염복규, 위의 논문, 2004, 196~197쪽).

18) 염복규, 앞의 논문, 2004, 208~214쪽 참조.

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고문이라는 행위가 ‘고문치사’로 이어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고 한 이래 이러한 의식이 확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전 대한제국 상태에서 일본에 강점된 식민지 조선사회 내에서는 아직 ‘인권’ 의식이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는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여론에서 피해 인물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 도덕적 판단기준이 작동한 점에서도 알 수 있다. 3.1운동이 진행 중인 1919년도에 발생한 다음 두 건의 고문치사 사건 사례를 비교해봄으로써 당시의 분위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1919년 5월 18일 저녁 7시경 일본육군보병 중위로서 서산수비대장인 세가와 마사오(瀨川正雄)가 평소 ‘不逞鮮人’이라 칭하던 明潤源(瑞山, 38세, 무직)을 서산수비대 뜰 안에서 傷害致死한 사건이다. 1911년 3월 이래 순사보로 근무하던 명윤원은 평소 주색 등으로 소행이 불량하고 인민을 자주 구타한 등의 이유로 1917년 해직을 당했는데, 그 뒤부터는 그가 ‘排日’ 감정을 지녔다고 당국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그가 당일 오후 5시 반경에 수비대에 와서, 읍내 三仙庵에서 조선인 약 20여 명이 모여 ‘불온한 密議 중이라고 신고했는데, 이는 개인적 원한 관계로 인한 허위 신고로 밝혀졌다. 이 일로 서로 다투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결국 명윤원은 상해치사를 당하였고, 당국은 사체를 검시하여 유족에게 인계했다. 그런데 당국은 명윤원의 평소 性行이 無賴漢이고 “이번 소요 사건에 대해서도 은밀히 선동한 것이 의심되는 자”라면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風評도 다음과 같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공주헌병대장, 서산경찰서장 등도 이를 ‘정당방위’라고 보고했다.¹⁹⁾

19) 「不逞鮮人傷害致死의 件 報告」, 1919.5.30., 宇都宮太郞(朝鮮駐劄軍司令官)→田中義一(陸軍大臣); 「守備隊長 不逞鮮人 斬殺에 관한 건」, 1919.6.2., 兒島?次郎(朝鮮憲兵隊司令官)→田中義一(陸軍大臣).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그의 사망에 대해 관헌 및 內地人은 추호도 동정하지 않으며 중위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며,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 조선인 측에서도 평소 그를 뱀이나 전갈 보듯이 끔찍이 싫어했고, 그의 죽음을 매우 기뻐하여 동정하는 자가 없어 因果應報이자 천벌이라고 평한다. 장례식장에도 모인 자가 전혀 없고 유족뿐이다.

두 번째는 사례는 1919년 12월 충북 괴산서에서 일어난 고문치사 사건이다. 그해 10월 괴산군 牧渡面事務所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자가 해고되자, 그는 牧渡駐在所에 면장을 비방하는 투서를 보냈다. 이 일로 그는 경찰에 붙잡혀 가서 취조받던 중 사망하였다. 경찰 측에서는 病死라고 주장했지만, 동리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고문치사로 받아들였다. 이에 12월 31일 200여 명의 군중이 주재소와 순사들 숙사를 습격하여 기구와 서류들을 파괴하며 밤새 머물다가 이튿날인 1920년 1월 1일 아침에야 겨우 해산했다고 한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괴산서장 오구라 야스하루(小倉泰治)와 警部補 다카시 무라마츠(村松高志)가 1921년 2월 말에 휴직을 당하였다.²⁰⁾ 고문치사를 당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원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그는 면사무소의 말단 하인으로 일하면서 면민들과 신뢰를 쌓아갔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3.1운동 이전 무단통치기 조선사회에서는 생명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성보다는 고문치사를 당한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도덕적 잣대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었다. 「태형령」의 저축 사건이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시피, 위의 두 사건 역시 흔히 말하는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다. 이 시기 고문치사 사건 역시 특별히 정치범이나 사상범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조선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범이나 사상범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그 자체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지만, 경범들의 경우에는 달랐던 것이다. 태형령이 폐지되고 이른바 ‘문화통치’가 실시된 뒤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었다.

20) 「槐山에 不祥事, 서장과 경부보가 휴직까지 당했다」, 『毎日申報』 1921.3.8.

2. 태형령 폐지 이후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

1919년 3.1운동은 조선과 일본, 어느 쪽도 그렇게 폭발적으로, 장기 간에 걸친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평범한 조선민중 일반이 대거 참여하여 근대 민족운동의 성격으로 전개된 이 운동은 조선과 일본 양측 모두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무단통치기 야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태형령」 폐지 역시 이 변화 가운데 하나였고, 이의 폐지는 ‘문화통치’의 주요한 상징으로 선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 3월 31일 제령 제9호로 「조선태형령」 폐지를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다만, 부칙에 “조선태형령에 의해 태형에 처해지거나 벌금 혹은 과료를 태형으로 대체하여 아직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라는 단서 조항을 넣음으로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집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1920년대 들어 「태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자백을 얻기 위한 실제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은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현행 형사정책을 살펴보면 가장 의혹이 자심한 것은 범인을 취조 심문할 때 육체의 고통을 주는 고문 사건이다. 그중에도 조선인에 한하여 더욱 심한 것은 누가 생각하든지 불공평을 부르짖지 아니치 못 하겠도다. 재작년 4월부터 폐지하는 지경에 돌아가고만 笞刑法, 그것이 조선인을 어느 정도에 가두고 시행하였던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에는 조선인 된 자는 누구든지 모골이 송연치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인류에게 주지 못할 악행이 개정의 일단을 얻어서 겨우 태평이 면제된 조선 민족을 취급하는 형사 집행자의 금일 현상을 보면, 비록 明文으로는 태형이라는 법이 없어졌지만 소위 범죄자를 취급하는 그 실상을 보면 심문을 받는 자의 고통은 태형법이 시행되는 수삼년 전보다도 오히려 혹독하여 그 폐해는 각반으로 분기되는 일이 많으니, 그 진상을 두어 가지 들어 말하면, (중략) 人權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경관이 많으므로 (후략)²¹⁾

21) 「時代錯誤의 拷問事件, 笞刑의 舊制를 依然準用?」, 『朝鮮日報』 1921.9.29.

위의 중략 부분에서 언급한 ‘진상’에는 「태형령」 폐지 직후인 1920~21년 사이에 발생한 다수의 고문치사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태형령」 폐지 다음 해인 1921년 9월 전남 보성군 筏橋署에서 권총 한 자루 분실된 일로 무고한 양민 金照鎬와 일가족을 고문하여 5인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²²⁾ 이들이 모두 ‘무죄’로 방면된 직후에 사망한 것을 보면,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자백이라도 받기 위해 당시 경찰이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자행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양민 학살에 버금가는 ‘고문치사 사건’ 등을 두고 이 기사에서는 「태형령」 폐지 이후 오히려 “상고시대의 四親九族을 멸하는 제도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3.1운동을 거치면서 조선인 일반의 인권 의식은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문화통치’ 아래서 빈번하게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은 일제 당국으로서도 큰 고민거리였다. 고문이 불법임은 경찰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죄로 방면될 때, “고문 사실을 일체 토설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기도 했다.²³⁾ 심지어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회의에서도 조선에서 발생한 수많은 ‘고문치사 사건’ 사례를 들어 “헌병시대보다 양민에 대한 고문이 더 심해졌다.”²⁴⁾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조선사회 내에서도 고문치사 사건과 그 처리 과정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고문치사 가해자의 공판이 열리면, “방청석은 요사이 경관의 행패가 심하다는 것만큼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만원이” 되는²⁵⁾ 상황에서도 짐작이 가능하다.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의 여론이 높아져 갔음에도 불구하고

22) 아래 9번 사례. 이 사건 외에도 황해도 평산군 南川署의 周藤 순사가 밀정 洪元杓을 통해 독립단원 李春三을 인치하던 중 구타로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 및 불법체포 사건(8번), 기타 경기도 관내에서 주민들이 고문치사라고 주장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다.

23) 1921년 6월 중순 ‘경성경찰부 고문사건’으로서, 중국지폐 위조사건 및 군자금 모집 혐의로 李重胤을 체포하여 쿡구명에 냉수를 주입하고 竹片木棒으로 난타하는 등 고문을 가하다가 결국 그가 석방되자 경관들이 부탁한 것이다(『議會의 朝鮮關係問答(40)』, 『東亞日報』 1922.4.28.).

24) 「議會의 朝鮮關係問答(34)」, 『東亞日報』 1922.4.15. 이 ‘조선관계문답(34)’ 외에 38~40번을 보면, 아라카와(荒川) 위원이 다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질의했음을 알 수 있다.

25) 「犯人을 拷問致死한 楊平署員의 公判」, 『朝鮮日報』 1927.3.4. 아래 20번 사례.

1920년대 중후반, 1930년대를 거치면서도 ‘고문치사 사건’은 끊이지 않았다. 이는 1920년대 이래 조선사회 내에서 계급·계층별 대중투쟁과 조직운동이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년·학생, 노동자·농민을 중심으로 한 조선인 일반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간 상황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른바 ‘문화통치’로 확보된 약간의 열린 공간, 즉 조선·동아 등 한글 신문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의 사실과 이후의 대응이 일부 공개됨으로써, 이 시기에는 그나마 비판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 당대 신문자료를 활용하여 「태형령」이 폐지된 1920년 4월부터 중일전쟁 전인 1937년 6월까지, 즉 ‘문화통치기’에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 총 40건의 현황을 사건 발생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⁶⁾

〈표 1〉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본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총 40건)

	일시	지역	치사자	고문자	내용(범죄)	경위	대응	결과	출전
1	1920.4.경	평남 성천	尹炯	성천서	독립단 협박으로 50원 제공	고문, 방면 직후 사망			동아 22.4.24
2	1920.5.경	평북 철산	盧履璜	철산서		고문, 무혐의 출옥 후 과다출혈로 즉사			동아 22.4.28
3	1920.8.경	서울	金巨福	서대문서	불온연동	미국의원단 경성시찰 시국에 체포, 고문 즉사			동아 22.4.15
4	1920.8.15	평남 안주	郭成俊	안주서	한문교사 宋炳七의 시국관계 범죄 혐의	고문치사, 심장병이라 주장, 검시 결과 상해치사 판명	동생 泳俊이 수차례 고소했으나 수리하지 않음, 조선인을 土葬視한다며 총독부 및 도쿄 대신들에게 진정서 제출	순사부장 진근, 순사 金聖日 李興敏 감봉	동아 22.4.24
5	1921.2.경	평북 철산	韓禮源	철산서		고문치사			동아 22.4.28
6	1921.3.경	평북 개천	李大—(21)	개천서	시국관계 범죄 혐의(무죄 주장)	물고문 등으로 질식사			동아 22.4.11, 4.25

26) 이 시기에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 가운데서도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인물의 ‘고문치사 사건’과 1920~30년대 활동했으나 1937년 7월 중일전쟁 이후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은 제외하였다. 또한 국내에 한정하여 조사했다. 무단통치기와 3.1운동 참여, 그리고 전시체제가 이후, 국외 조선인 고문치사자를 포함하면, 엄청난 수치에 이를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는 신문에 보도된, 다시 말해서 그나마 여론화된 사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1921.봄경	함 북 운성	黃宗熙	의주서	시국관계로 만 주에서 체포, 주서로 송환	고문, 무혐의로 방면 후 사망			동아 22.4.25
8	1921.4.18	황 해 평산	李春三(23)	南川署 物 開駐在所 순사 周藤 沙光, 밀정 洪元杓	독립단원을 자 택에 묶게 함	천정에 매달고 구타 등 수차례 고문 후 인치 도중 사망	周藤은 독직 상해 치사죄, 홍원표는 불법체포 감금 상 해치사죄로 고소	항소심에서 주동 징역 5 년, 홍원표 4년 선고	동 아 / 조 선 21.9.16
9	1921.9.경	전 남 별교	金照鎬와 가족 4명	별교서	별교서 육혈포 분실	무죄방면 후 전 원 사망	‘불법감금 상해살 인’으로 고소, 대표 로 李善慶와 金東 基 도쿄 파견, 중 앙정부 탄원		조선 21.9.19, 9.29
10	1921.10.13	경 기 광주	朴仁健(35)	송 파 주 재 소	강도범인	고문 중 사망, 바로 매장(자살 주장)	경성지법에 사실 경위 파악 요구 탄원서 제출	부검 후 자 살(縊死) 판 명	매일 21.11.20
11	1922.1.21	황 해 장연	金相汝(29)	장연서	절도 혐의, 도 박죄	물고문, 凍死			동 아 22.2.9-10
12	1924.12.21	평 남 개천	金漢鎭(32)	개천서 순 사 黒木과 李達浩	3.1운동 때 기 소중지 처분, 살인미수 혐의	무수히 난타, 고문, 부검 후 전신 타박상 확 인	“병사라면 인수하 되 타살이라니 우 리는 받을 수 없 다.”며 통곡, 고소	개천서장이 20원 주여 장례	조선 24.12.27, 25.1.1
13	1925.3.9	평 북 정주	金龍守(22, 金鳳盆, 5대독자)	곽 산 주 재 소	절도 혐의(불복), 李明烈의 고발	물고문, 구타, 무죄방면 후 사 망, 부검 후 절 대 비밀	부친 김은필 고소 제기, 친족 연서로 진정서 제출, 검찰 고소 기각 후 항고 제기, 재차 기각 (사건 해결 후 매 장하기로 했으나 경찰이 1년 넘게 방기)	부친이 시체 유기죄로 검 거, 징역 1 4.8 / 동 아 26.9.7, 12.9, 27.1.22 (1926.11.22.)	매일 25.3.17, 4.8 / 동 아 26.9.7, 12.9, 27.1.22
14	1925.6.13	충 남 청양	宋炳采	청양서	청양·홍성 일 대 부호들에게 독립운동자금 모집	체포 당일 밤 급사, 경찰은 자 살 주장	당질 宋守完이 검 사국에 고소, 부검 후 자살 판명, 친 족은 계속 불복		조선 25.6.24
15	1925.10.11	함 남 함흥	張雲鎬(67)	連浦駐在所 순사 金讚	의생 허가 없이 진료, 李周鈺의 고발	인치 중 함흥서 앞에서 사망	사실무근, 주재소 측의 중재 및 협 상		시대 25.10.27
16	1926.2.26	경 남 합천	姜泰亨(38)	대양면 주 재소 순사 金敬熙	절도 혐의	2일간의 취조에 서 무수한 구타 로 즉사, 부검	친족 항의로 부검 후 공판 난타로 판명, 동인 200여 명이 주재소 습격	김경희 검찰 호송(2.28)	동아 26.3.1-2, 3.6
17	1926.6.2	경 북 김천	河祥佑(47)	김천서 형 사 李學千	도박장 제공 혐 의	물고문, 전기고 문, 방면 26일 후 사망	(부검 후 사실 여 부는 극비리에 불 임)		시대 26.6.6
18	1926.6.17	정 북 정읍	朴萬石(39, 노동)	순사 陳基 獻	부랑자나 행려 자 취급	실신으로 병원 이송 다음날 사 망	이우 박만용, 박만 춘, 모친 주성녀가 고소 제기		조선 26.6.22
19	1926.12.5	황 해 장연	李應相(52)	今卜駐在所 순사 齋藤友吉	石明珍이 절도 죄(5원)로 고발, 본인 부정	절도 전신 난타, 물고문	부검 후 고문 확인, 고소 제기	구타치사죄 로 징역 1년 (2년 구형)	조선 27.1.5

20	1926,12,7	경 기 양평	金有榮	양평서 순사 橫山彦四郎, 山田久治, 町田藤江	강도 혐의	물고문으로 질식사	독직 상해치사죄로 기소	면직. 山田 2년 반, 나머지 2년 구형	조선 27,3,4
21	1926,12,20	강 원 양구	金弘建(59, 金全一)	萬岱 주재소 순사 岡彦一郎, 金一龍	金尙奎 집의 버절도 혐의	자백 없자 구타 사망	독직 상해치사 사건으로 고소 제기	岡彦 징역 3년, 김일룡 2년	매일/중외/동아 / 조선 27,1,19-2,26
22	1927,3,21	평 남 성천	高某	良馬駐在所	모 사건 피의자	취조중 급사	고문치사로 의심		조선 27,3,23
23	1927,11,15	함 남 단천	李永培(37, 본적 등 불명, 품팔이)	大新駐在所	강도 혐의(군자금 모집)	유치장에서 급사, 부검 후 구타 흔적 발견, 병사로 발표하며 절대비밀에 붙임	친형제 같은 崔官福, 金在澤이 방문, 단천·성진 내각 단체가 '端川警察疑獄事件'으로 조사, 사회화 결의		조선 1927.11.22~12,2
24	1929,7,6	함 남 안변	박씨(元容俊의 처)	中坪里駐在所 순사 秦啓燦	절도 혐의	고문치사, 부검	남편 원용준이 진계찰을 고소		매일 29,7,13
25	1929,10,19	평 북 철산	金致恒(36)	車龔 주재소 高순사	모르핀 환자 혐의(하질 환자)	취조 중 고문치사, 부검	아내 鄭氏의 항의		매일 29,10,26
26	1931,2,1	함 남 정평	李鉉稷(38)	정평서	전 농민조합 집행위원장	병원 이송 후 즉사, 부검 후 사인은 담석증 발표	처가 고문치사 주장, 계속 의심		동아 31,2,3
27	1931,4,22	함 남 문천	金龍錫(45, 부친 金仲烈 함께 취조)	雲林 경찰관 주재소 순사 小野正明	화전민이 陵谷國有林 방화, 森林수 위반	머리를 난타당해 뇌막출혈로 급사	고문치사로 판명, 고소	독직죄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4년 구형)	동아 / 조선 31,6,20-8,2
28	1931,6,11	전 남 나주	김모 외 4인 중 1인	나주서	절도 혐의	고문치사	신문 사실에서 조사 필요 주장		조선 31,6,21
29	1931,11,4	전 남 광주	申仲善(20)	松汀面駐在所 주임 一村秀一, 순사 簗谷亨, 朴泳喆	절도 혐의, 평소 부랑자로 주목	인치 도중 돌과 편치로 머리 등 구타, 취조중 구타 고문	독직 상해치사죄로 기소	2명은 징역 2년, 박영철은 징역 4월에 집유 2년	조선/동아/중앙 32,2,5
30	1932,1,23	함 북 종성	崔某(간도 방면에서 들어옴)	潼關洞駐在所	강도 혐의(군자금 모집)	취조중 즉사	부인 방문, 부검 후 고문치사 확인		조선 32,1,29
31	1933,3,13	함 남 원산	원산서 高岩野秀雄, 金本五郎, 金昌朝	朴輝秉(29)	덕 원봉 민 조합 재건 사건으로 예비검속	물고문, 난타로 심장마비, 가족의 주장으로 부검 후 고문치사 판명	독직 상해치사죄로 고소, 同志葬 거행, 조선총독 상대로 위자료 5천원 소송 제기	즉시 파면, 은급 취소, 高野 징역 2년, 2인은 2년에 집유 3년	동아/조선/조선중앙/매일 등
32	1933,4,23	함남 북청	趙宇(27)	북청서 주임 后藤二六, 北井俊民	북청적색농민조합 간부	취조중 고문치사	살인 독직죄로 기소,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검사가 항소)	后藤 징역 2년, 北井 징역 6월에 2년	동아/조선/조선중앙/매일 등

33	1933.8.18	함 남 갑산	延興俊(27)	泮橋駐在所	아편령 위반	부검 후 불확실, 병사(赤痢)로 발 표	고문치사로 의심 (부검 결과는 불확 실로 판명)		조선중앙 33.9.2
34	1934.2.12	함 남 정명	元龜年(31)	정명서 손 사 大久保 勇藏, 松本 勝一	정 평 농 민 조 합 재건운동	취조 10여 분만 에 즉사, 부검 후 고문치사 확 인	함께 검거 후 석 방된 부인 등이 독직사건으로 고 소, 변호사 元澤淵	각기 징역 1 년 반 연도	조선/동아/매 일 34.2.16~5.21
35	1934.4.25	강 원 통천	金洛九	경부 小路 俊雄	적색농민조합운 동의 거두	도경찰부 고등 계 경부가 직접 전기고문	독직 상해치사 사 건		조선 34.10.21
36	1935.1.경	황 해 송화	趙藩齋(61)	栗里駐在所 순사부 장 熊田正 夫	사문서 위조 혐 의	혼수상태로 인 계 직후 사망, 부검	부검 후 고문치사 판명, 독직죄로 기 소		매 일 / 조 중 35.2.5~6
37	1935.5.13	경 북 김천	崔仁根(22)	김천서	비밀결사 혐의, 김천군 농회 지 도원	40여 명 취조중 급사, 고문치사 아님 주장	부검 후 뇌진탕 판정, 의혹 제기	극빈하여 매 장 방도 없 음	조 선 / 동 아 35.6.1~4, 19
38	1936.2.16	평 남 용강	韓治良(52)	龍岡署	절도 혐의	석방 다음날 사 망	유족들 고문치사 주장, 부검		조선 36.2.19
39	1936.4.18	함 북 무산	朴姓女(37)	무산군 新 站駐在所	절도 혐의	석방 다음날 사 망	남편 崔基萬이 고 소 제기, 부검		동아 36.5.5
40	1936.10.25	함 북 종성	朴鳳旭(용 정춘 거주)	三峰駐在所 순사 奥田恒三, 金友吉	아편 밀수 혐의	상 삼 봉 역에서 불잡혀 고문치사	독직 상해치사 사 건	복심 검사가 각 징역 2년 구형	조선 37.1.14

Ⅲ. 한글 신문을 통한 비판 여론의 고조

3.1운동 이후 ‘문화통치’의 실시와 「태형령」 폐지는 조선인 일반에게 근대적인 인간관, 인권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범한 조선인도 대부분 태형제의 폐지를 일반적인 근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고문 금지’가 조선에서도 시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실제 조선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고문은 물론 ‘고문치사 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오히려 헌병경찰이 통치하던 무단통치기보다 고문이 더욱 만연한 듯한 현상을 보였으니,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다.

여기에는 이른바 ‘문화통치’ 이후 조선·동아 등 한글 신문의 보도라는 변화된 상황도 한몫했다. 1921년 당시 신문에서는 “인류에게 주지 못할 악행이 개정의 일단을 얻어서 겨우 태형이 면제된 조선 민족을

취급하는 형사 집행자의 금일 현상을 보면, 비록 明文으로는 태형이라는 법이 없어졌지만 소위 범죄자를 취급하는 그 실상을 보면 심문을 받는 자의 고통은 태형법이 시행되는 수삼년 전보다도 오히려 혹독하다면서 “인권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경관”이 많다고 비판했다.²⁷⁾ 앞서 1922년 ‘제헌의회’에서 조선의 고문 사실을 폭로한 아라카와 의원 역시 “헌병시대보다 양민에 대한 고문이 더 심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192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다. 신문의 가십란에는 “조선의 경관은 대체 殺人狂으로만 채용하였는지!”²⁸⁾라는 비난까지 등장했다. 1926년에 실린 다음의 신문 사설을 살펴보자.

1. 조선은 세계에 類가 없는 전제정치인 행사지이다. (중략)

2. 12월에 들어서 보도된 경찰의 고문치사 사건이 3종이나 된다.²⁹⁾ (중략) 그러나 이미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대부분 경찰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니, 지나친 말이 아닌 줄 믿는다. 조선에서 총독부 방침으로 고문을 금한 지 이미 오래지만 종래 사실을 지적하여온 바와 같이 고문사건은 그 종적을 끊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당국의 성의있는 하등의 방침 또는 심하게는 태도 여하까지도 실제로 표시된 바가 없다. 고문사건으로 다소 세상의 이목을 끌게 되는 것은 치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제가 되고 주목거리가 될 뿐이요, 여간한 고문사건은 세상에 별로 드러나지도 아니하고 암암리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숨기지 못할 사실이니, 오인은 당국자에게 다시 그 이유를 묻지 아니할 수가 없다.

3. (중략) 조선 경무당국은 이에 대하여 정치·도덕상 무슨 어떠한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인권의 유린도 이 정도에 이르러서는 실

27) 「時代錯誤의 拷問事件, 答刑의 舊制를 依然準用?」, 『朝鮮日報』 1921.9.29.

28) 「橫說堅說」, 『東亞日報』 1926.3.2.

29) 1926년 12월 5일 황해도 장연에서 절도 혐의자 李應相(52세)이 구타와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朝鮮日報』 1927.1.5.), 12월 7일 경기도 양평에서 강도 혐의자 金有榮이 물고문으로 질식사한 사건(『朝鮮日報』 1927.3.4.), 12월 20일 강원도 양구에서 절도 혐의자 金弘建(59세)이 구타로 사망한 사건(『每日申報』, 『東亞日報』, 『中外日報』 1927.1.19.~2.26.) 등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고문치사가 인정되어 가해자인 순사가 ‘독직,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로 언어도단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전제정치의 조선이요, 경찰 만능의 조선이므로 법률로 금하고 방침으로 불허한다는 고문사건이 人命을 살해하는 데에까지 이를지라도 그 양심상 가책되는 바가 있지 아니할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리 전제정치를 받는 조선사람일지라도 현대의 세계적 공기 중에 호흡을 계속하는 사람들인 이상 조선사람들의 가슴에 어떠한 것이 움직일 것인지, 그것만은 고찰하는 眼力이 있음 직하다. 또한 현 경무 당국자들에게 이만한 총명은 있을 줄 믿는다.³⁰⁾

위의 글에서도 태형제 폐지를 “총독부 방침으로 고문을 금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 조선을 세계에 유례없는 전제정치가 행사되는 곳으로 규정하면서, 고문사건은 너무나 빈번하여 ‘고문치사 사건’ 정도가 되어야 겨우 세간의 주목을 받는 현실, 이러한 인권의 유린 상황에 대해 일제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을 통탄하며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아무리 전제정치를 받는 조선사람일지라도 현대의 세계적 공기 중에 호흡을 계속하는 사람들인 이상”이라 하여,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인 역시 세계적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인권을 지닌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다.

1930년대 들어 항일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일상적으로 더욱 심한 고문이 자행되고 그 결과 ‘고문치사 사건’이 더욱 빈발해지자, 한글 신문들은 앞다투어 이를 비판하는 논설을 실었다. 또 근대 이래 고문 폐지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베카리아의 사상을 재조명하면서 지면에 소개하기도 했다.³¹⁾ 1931년 함남 문천서에서 火田民이 국유림을 방화했다가 ‘삼림령 위반’으로 검거되어 고문치사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조선일보』는 1면 사설을 통해 태형 폐지 이후의 고문 빈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30) 「拷問致死와 警察當局」, 『東亞日報』 1926.12.20.

31) 「月曜論壇 拷問廢止의 法的論據 - 베카리아의 思想(李晶燮)」, 『中外日報』 1930.9.15.

(전략) 그러나 조선에서는 아직 일부에 怪現象이 남아있어, 이는 有罪者에게 사용하던 肉刑 방법은 폐지되었으되 피의자에게 사용하던 拷問 수단은 왕왕 폐지되지 않은 것이다. 이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이는 명백히 先後가 顛倒된 것이며 本末이 插置된 것이 아니지 않을 것이다. 유죄자에게 육형하는 것까지 非人道的이고 非文明的이라 하여 11년 전에 이것을 폐지하고 말았거늘, 어찌하여 죄의 有無를 알지도 못하는 피의자에게 대하여 그 供述을 促하고자 육형을 가하는 것일까. 고문은 태형 이전에 폐지되어야 옳은 것이니 태형이 이미 폐지된 금일, 오히려 이것이 행사되고 있는 것은 실로 용납할 수 없는 큰 矛盾撞着이라 할 것이다. (중략)

한 私人으로서 인권을 유린했다 할지라도 民權의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대 법률 사상으로 보아서는 심상치 않은 壞亂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거늘, 경찰관리의 신분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감행함은 결국 용서치 못할 罪過이며, 또 官權을 남용한 불법행위로서 人命을 상하기에 이른 것은 보통 傷害致死 정도의 罪過가 아닐 것은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가 가끔 발생하는 것은 경찰계의 時弊이니만큼 이 기회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후를 경계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 ‘경찰의 민중화’를 촉진키 위하여 佩劍까지 끄르게 한다는 이때이니 고문을 실행 법률적으로 엄금하여야 할 것은 目睫에 逼한 急務이다.³²⁾

피의자 상태에서 고문당하는 것은 태형 이전에 이미 폐지되어야 옳은데, 어째서 조선에서는 비인도적이고 비문명적이라며 태형을 폐지한 뒤에까지 피의자 고문이 남아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괴현상’이자 앞뒤가 전도된 ‘모순’이라면서, ‘민중의 경찰화’를 부르짖는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인에게는 이러한 인권유린이 “약간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다”고 보는 것은 ‘봉건적 악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화통치기’에 표방된 ‘경찰의 민중화’ 캠페인

32) 「文川拷問致死事件, 犯人을 嚴詞하라」, 『朝鮮日報』 1931.6.21.

은 “다양한 회로를 통해 지역 민중의 경찰 이미지를 좋게 하는 시책”이며, ‘민중의 경찰화’는 “이러한 민중을 조직화하여 치안유지체제를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책”이었다.³³⁾

한 걸음 더 나아가 1932년 2월 『동아일보』 1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가해 상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고문 행위 자체를 엄금하는 법과 철저한 조사기관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행정당국으로부터 이 문제에 관한 철저한 조사기관의 설치가 있기를 바란다. 司法의 손으로 고문치사의 확증이 성립된 이상, (중략) 만일 심문과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權能이 부여된 기관을 세워 철저한 조사를 한다면 그 진상을 어느 정도까지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일 행정당국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선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비상수단적 수사 방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약간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다는 혐의를 준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 하면 이는 확실히 민중의 복리를 무시한 봉건적 악습의 옹호라고 볼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다 할진대 조선의 행정상 하나의 暗影을 짓고 있는 이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중대한 태도의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³⁴⁾

고문 및 고문치사의 빈발과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대 한글 신문 뿐만 아니라 일제 당국조차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사법 당국자가 경찰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예컨대 고등법원 판사 고쓰마 히로미(小松博美)는 『경찰휘보』를 통해, 자백은 “심증 판단의 한 기초를 이루는 증거에 불과하다”면서 “고문에 의해 이루어진 자백은 진실 여부와 상관

33) 마쓰다 토시히코, 이종민·이형식·김현 옮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2020, 423쪽.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의 제4부 제3장 참조.

34) 「拷問事件을 論함, 인권유린의 有無를 밝히라」, 『東亞日報』 1932.2.12.

없이 증거능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단죄의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고문 사건으로 경찰관의 瀆職罪가 생기고 인권유린이 발생 하는 것에 대해 “담당자는 깊이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³⁵⁾

이렇게 1920년대 중후반 이래 고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철저하게 근대 사회의 인권 의식과 인간의 존엄성 자체에 기반하고 있었다. 고 문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잔인한 野習’ 으로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개인의 린치”라 하여, 청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로 명백히 인식되었다. 고문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은 경찰의 비인도적 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경찰의 존재 목적은 사회생활의 질서 유지에 있으므로 (중략) 사법 경찰관이 증거를 구체적 재료에 의거하지 않고 피의자의 자백에 信 據하러 함은 치졸한 수색방침이며,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키 위하여 법률상으로 확실히 刑으로서 禁制되어 있고 인도적으로도 唾棄할 蠻 風인 고문에 訴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부여 한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도리어 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형사상 책임 도 크려니와, 더욱이 그 범죄가 확실한지 아니한지 재판 수속도 밝기 전에 公刑에 처하기 앞서 함부로 私刑을 가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도 비난받아야 할 비인도적 행위라 할 것이다.³⁶⁾

이렇게 고문, 특히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점증 하고 있는 상황은 1930년대 들어 ‘사상범’, 즉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계 통의 항일투쟁이 격증한 상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일제 당국으로서도 줄곧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예컨대 혁명적 대중운 동의 중심지였던 함경남도에서만 1933~34년 당시 1년 사이에 7건의 고 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는 등으로 경찰의 독직 사건이 빈발해지자,³⁷⁾ 언

35) 小松博美, 「拷問と自白」, 『警察彙報』 309, 1932.1, 31쪽.

36) 「拷問致死事件의 公判, 今後弊害根絶이 必要」, 『朝鮮日報』 1933.6.8.

37)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又復不詳事」(1933.7.18.)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원산, 고원 등지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론에서는 「사상범 취조 방식과 검찰 당국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다. 이 제목 아래에 「검거 독려로 고문사건 疊出, 고문으로 독직 사건 빈발」이라는 소제목을 넣었는데, 이는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즉 ‘사상범’이 늘어나니 당국은 검거를 독려하고, 여기에 부응하다 보니 일선 경찰은 고문 및 고문치사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 경찰관의 ‘상해치사나 독직 사건’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빈발해가던 연쇄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934년 3월 말에 함경남도에서 열린 ‘사상경찰과 기타 고등경찰 사무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미없는 공기”를 띠었다고 한다.³⁸⁾

조선과 같은 사상관계 검거가 많은 곳에서 그 취조를 할 때에 경찰 간부와 하급 경찰관 사이에 이와 같은 딜레마가 생기는 것은 경찰이 사상관계 피의자를 취조하는 방법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즉 비합법적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찰계 상하 간에 취조 방법에 큰 모순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만치, 경찰계의 깊은 반성을 촉진하는 중요한 문제라 한다.

‘고문치사 사건’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간부 측과 일선 경찰 사이에 갈등과 마찰이 심했고, 이는 ‘사상관계’ 피의자의 취조 방법에서 고문과 같은 ‘비합법적 방법’을 쓰는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도 고문치사 사건이 끊이지 않자, 총독부에서는 “관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의미에서라도” 조선에 감찰제도, 즉 ‘특수감찰기관 설치’를 고려하기도 했다. “조선과 같이 모든 행정권을 총독이 쥐고 있는 정치조직화에 있어서는 단순한 강기속청보다 관권의 남용을 억제하는 의미에서라도 행정 기타 경찰 방면에 대한 감찰제도라는 것은 단연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아직 행정

38) 「思想犯 取調方式과 檢察當局의 딜레마, 檢舉督勵로 拷問事件 疊出, 拷問으로 贖職事件 頻發」, 『朝鮮日報』 1934.4.13.

재판제도가 없고 訴願 법규가 없는 데다가 관리의 독직 사건을 비롯한 관리의 비행이 자주 중대 문제화하는 실례로 보아” 감찰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의 비등된 여론”이라고 보았다.³⁹⁾ 1935년 평양경찰서 사법계실 벽에는 누군가가 경찰을 조롱하듯이 “물을 먹이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크게 써놓은 웃지 못할 만한 일까지 벌어졌다.⁴⁰⁾

하지만 이후 전시체제기로 들어서면서 총동원 등 여러 방면에서 경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고, 더 이상 언론에서도 고문치사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⁴¹⁾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특별한 감찰기관이 설립되거나 고문 금지 법령이 제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대응과 성격

1. 고문치사 사건의 처리와 대응

〈표 1〉의 사례들을 통해 ‘고문치사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탄원서 제출 및 고소(피해자측)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정리할 수 있다.⁴²⁾ 물론 부검 및 고소는 피해자 유족 측에서 제기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며, 고소하지 않는 경우 이후의 절차는 없는

39) 「官吏綱紀弛緩으로 監察制度를 準備, 行政裁判 업는 朝鮮서 極必要, 總督府當局 銳意研究」, 『朝鮮日報』 1934.4.6.

40) 「水刑은 不法이다, 司法室에 大書特書, 우서버릴 수는 업섯든가? 平壤署 所爲者를 探查」, 『朝鮮日報』 1935.2.20.

41)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어도 1930년대 후반부터 고문치사 사건이 다소 잦아들었다고 보는 연구도 있지만(임상혁, 앞의 논문, 2008, 288쪽), 실상은 언론을 통한 보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42) 이하에서 ‘피해자 측’이란 좁게는 피해자의 유족을 뜻하지만, 넓게는 이들을 포함하여 ‘고문치사 사건’ 자체에 비판적인 조선인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가해자 측’도 좁게는 고문치사를 행했던 가해 당사자를 뜻하지만, 넓게는 이들을 포함하여 총독부와 경찰, 사법관료 등 관계 당국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셈이다. 또 고문 피해자가 사망한 장소, 즉 인치 과정 혹은 경찰서 내 고문 과정에서 즉사했는지, 아니면 사망 직전까지 고문한 뒤 병원 이송 혹은 가족 인계 이후에 사망했는지 등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었다. 먼저 총 40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이들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문치사자의 사망 장소

사망 장소	경찰서 내	방면 후 자택	인치 도중	병원 이송
건수	26건	9건	3건	2건
사례번호	3-6/10-12/14/16/19-25/27/ 28/30-35/37/40	1/2/7/9/13/17/ 36/38/39	8/15/29	18/26

* 기사 내용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통상적인 예에 따라 경찰서 내로 구분함

경찰서 내 취조실 혹은 인치 도중에 즉사하거나 유치장 내에서 사망한 경우 당황한 경찰, 즉 가해자 측에서는 일단 상부에 보고하여 먼저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대응을 보였다. 은폐의 방법은 심장병 등 病死로 위장하거나(4/23/26/33/37번), 자살이라 주장하는 경우(10/14번)가 많았다. 또한 경찰은 가능하면 유치장보다는 병원 이송 후 사망한 것으로 꾸며서, 최소한의 인도적 처치는 한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⁴³⁾ 이후 시신을 가족에게 인도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 등 피해자 측이 은폐된 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무죄’ 혹은 실신으로 방면된 직후 자택 등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대부분 고문치사를 의심했으나, 이는 당연했다.

이처럼 유족인 피해자 측은 고문치사를 의심한 만큼, 일단 사실 확인을 위해 대부분 부검을 신청하였다. 드물긴 해도 사후에 신체를 해부하는 것은 두 번 죽는 것이라며 부검과 고소를 하지 말라고 유언을

43) 예컨대 37번 사례를 보면, 김천경찰서는 도립병원에서 죽었다고 발표했으나 「시체검안서」에는 명백히 김천경찰서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언론이 보도한 데서 알 수 있다(「取調中急死한 靑年, 震盪症으로 判明」, 『東亞日報』 1935.6.19.).

남긴 경우도 있었다.⁴⁴⁾ 부검은 가해자 측에서 公醫를 입회시켜 진행하였다. 위의 사례들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10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30건은 모두 부검을 진행한 셈이다.⁴⁵⁾ 경찰이 고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병사나 자살을 주장했으나, 검시 결과 ‘상해치사’, 즉 고문치사로 판명난 경우도 적지 않았다.⁴⁶⁾

가해자 측이 고문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여부는 해당 지역 경찰서의 입장이나 개별 경찰관의 양심 등에 좌우된 것으로 보인다. 부검 결과 고문치사를 경찰 측이 바로 인정한 경우도 있지만, 결과를 ‘절대 비밀’에 붙인다고 공표하여 의혹을 자아내거나 재판정에서까지 부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평소 건강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는 모두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위 23번 사례에서 평소 “펄펄 뛰던 사람(이영배, 34세·필자)이 하룻밤 사이에 죽은 것”을 보고 동리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겼다고 한다.⁴⁷⁾ 또 경찰이 비밀결사 조직 혐의로 40여 명을 취조하던 중 급사한 37번 사례 최인근(22)의 경우, 경찰은 끝까지 절대 고문한 적 없다며 발뺌했지만, 평소 ‘건강한 청년’이 어떻게 유치장에서 돌연사하느냐며 다수가 의혹을 제기했다고⁴⁸⁾ 한다. 물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 현지의 경찰뿐만 아니라 경무국의 입장은 일단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44) 도박장을 제공했다 하여 고문당하고 방면 26일 만에 사망한 위 17번 사례의 河祥佑(47)는 죽기 며칠 전 친구들에게 “내가 아무래도 못 살겠으니 죽더라도 고소하지 말라. 그러면 나를 해부할 터이니 두 번 죽음이 아니냐.”라는 유언을 남겼다. 상태가 위중하여 병원으로 옮긴 다음날 아침 그가 사망하자 고문치사 여론이 일어났다. 결국 그는 김천도립병원으로 옮겨져 부검했으며, 경찰은 결과를 극비리에 부쳤다(『金泉警察 拷問後 因病致死한 疑獄』, 『時代日報』 1926.6.6.).

45) 확인되지 않은 10건은 1, 2, 3, 5, 6, 7, 15, 22, 28, 37번이다. 이 가운데도 부검을 진행한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시했다고 본 30건의 경우, 기사에서 부검이 명시된 사례 외에도 가해자가 ‘독직 상해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사례도 포함시켰다.

46) 〈표 1〉에서 4/12/13/16/17/19/23/27/30/31/36/38번 등은 부검 후 ‘고문치사’로 확인되었다(부검 결과 ‘절대 비밀’로 공표한 경우도 포함). 이 외에 고소를 제기한 다수의 건도 검시 결과 고문의 흔적이 발견된 경우일 것으로 보인다.

47) 「疑問重疊한 被疑者暴死 / 發生하는 사람이 잡혀간 후 하로 밤새에 시체가 돼 나와 / 端川警察에 疑獄」, 『朝鮮日報』 1927.11.22.

48) 「金泉署에서 取調中の 思想青年 突然死亡」, 『東亞日報』 1935.6.2.

검거하였던 피의자가 경찰에서 사망하였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그 이상 상세한 보고가 없는 이상 아직 무어라고 말할 수 없소. 그러나 경찰서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매우 유감한 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갑자기 심장마비 등을 일으켜 죽는 일이 없는 바도 아닌즉 보고가 있기 전에는 고문치사 여부는 모르겠소.⁴⁹⁾

참고로, 위 40건을 대상으로 고문치사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20~30대의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음은 쉽게 확인된다.

〈표 3〉 고문치사자의 연령별 현황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상
건수	9건	9건	2건	3건	2건	15건
사례 번호	6/8/11/13/29/ 31~33/37	10/12/16/18/23/25/ 26/34/39	17/27	19/21/38	15/36	1~5/7/9/14/20/22/ 24/28/30/35/40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 측의 대응은 일단 부검 신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문치사로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피해자 유족이 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를 제기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부검 결과 死因이 ‘상해치사’ 등 고문치사로 밝혀진 경우는 대부분 고소를 제기했다. 위 4번 사례에서 보듯이 고소해도 관계 당국이 계속 수리하지 않아서 총독부를 비롯해 일본 내각에까지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야 겨우 조치(고소 수리는 아님)가 취해진 경우도 있었다.⁵⁰⁾ 이 사건의 경우 부검 결과 ‘상해치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끝

49) 「取調十分만에 死亡, 拷問致死한 嫌疑가 濃厚 / 警務局 某當局者 談」, 『朝鮮日報』 1934.2.16. 위 34번 사례. 변호사 元澤淵은 고문치사로 확신하면서 부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검정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50) 「議會議의 朝鮮關係問答(38)」, 『東亞日報』 1922.4.24. 부검 결과 ‘상해치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소가 받아들여져 정식으로 재판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다. 경찰 내부 징계 차원에서 전근 및 감봉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까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특이한 사건이다. 피해자 측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해 정식 재판이 아닌 경찰 내부 징계 차원에서 전근 및 감봉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직접적인 가해자인 경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검찰 당국에 고소를 제기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도 해당 지역 사법당국의 입장과 태도, 개별 사법관료의 양심 등의 요인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측의 대응으로 탄원서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는 〈표 1〉의 4번, 9번, 10번, 13번 등의 사례에서 보인다. 탄원서나 진정서 제출은 고소와 함께 진행하기도 했지만, 10번 사례처럼 고소 전에 먼저 사실의 경위를 제대로 밝혀달라며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사건은 경찰이 매장해버린 시신을 꺼내 부검한 독특한 사례이다. 1921년 10월 경기도 광주경찰서 송파주재소에서는 ‘강도범’으로 의심되는 朴仁健(35)을 고문하다가 사망하자, “주소, 성명 등을 몰라서 광주군 중부면장과 협의한 결과 시체를 인수할 자가 없다.”며 곧바로 공동묘지에 매장해 버렸다. 경찰과 행정당국이 공조하여 빨리 사건을 덮어버리려 했던 것이다. 뒤늦게 從弟인 朴仁和와 朴敬載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게 고문치사를 주장했다으나, 경찰은 목을 매어 죽었다고 대답했다. 일본인 순사부장조차 조선인 순사가 너무 때려서 죽었다고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매장한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을 실시하고 경성지방법원에 사실 경위를 조사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사 결과는 결국 목을 매어 죽은 縊死로 판정이 났다.⁵¹⁾ 이후 피해자 측에서는 이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위 40건의 사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瀆職罪, 상해치사죄’로 ‘고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사례는 최소한 22건 내외로⁵²⁾ 55% 이상이

51) 「의문의 留置場內 死體, 又復 拷問 致死說, 이번엔 송파주재소에서 생긴 의문의 사태는 아무래도 의심」, 『每日申報』 1921.11.20.

52) 〈표 1〉에서 10번의 경우 경성지법에 사실 경위 파악 요구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3번의 경우 사회단체가 ‘단천 고문치사 사건’으로 사회화시키기로 하였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소를 제기했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치는 않다. 이 외에도 신문 보도 이후 고소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다.

다. 또 총 40건 가운데 명확히 가해자 처벌, 즉 휴직, 감봉, 전근, 파면, 은給 취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이 확인된 사례는 15건이다. 어디까지나 신문 기사를 통한 것이라는 한계는 있지만,⁵³⁾ 이 가운데 재판 결과 징역 또는 집행유예 연도가 가사에서 확인된 사례는 다음 10건이다.

〈표 4〉 ‘고문치사 사건’ 가해자의 재판 결과

번호	피해자	사건 정보	발생지	가해자	재판 결과	비고
8	李春三 (23)	1921.4.18./ 항일운동	황해 평산	周蔭沙光(南川署 物窮駐在所 순사)	징역 5년	항 소 심 결과
				洪元杓(밀정)	징역 4년	
19	李應相 (52)	1926.12.5/ 절도사건	황해 장연	齋藤友吉(今卜駐在所 순사)	징역 1년	검사 2년 구형
20	金有榮	1926.12.7/ 강도사건	경기 양평	橫山彦四郎(양평서 순사)	(징역 2년 6월)	검사 구 형, 전원 면직
				山田久治(양평서 순사)	(징역 2년)	
				町田藤江(양평서 순사)	(징역 2년)	
21	金弘建 (59)	1926.12.20./ 절도사건	강원 양구	岡彦一朗(萬垵주재소 순사)	징역 3년	
				金一龍(萬垵주재소 순사)	징역 2년	
27	金龍錫 (45)	1931.4.22./ 삼림령 위반 (방화)	함남 문천	小野正明(雲林駐在所 순사)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3년	검사 4년 구형
29	申仲善 (20)	1931.11.4./ 절도사건	전남 광주	一村秀一(松汀面駐在所 주임)	징역 2년	
				管谷亨(松汀面駐在所 순사)	징역 2년	
				朴泳喆(松汀面駐在所 순사)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	
31	朴輝秉 (25)	1933.3.13./ 항일운동	함남 원산	高野秀雄(원산서 고등계 형사, 순사부장)	징역 2년	검사 3년 및 2년 구형, 즉 시 파면
				岩本五郎(원산서 고등계 형사)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3년	
				金昌朝(원산서 고등계 형사)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3년	
32	趙宇 (27)	1933.4.23. / 항일운동	함남 북청	后藤二六(북청서 고등계 주임)	징역 2년에 집행유 예 5년	검사 항소
				北井俊民(북청서 순사)	징역 6월에 집행유 예 2년	

53) 국가기록원의 조선총독부 판결문을 일일이 조사해보지는 못하였다.

34	元龜年 (31)	1934.2.12./ 항일운동	함남 정명	大久保勇藏(정명서 순사)	징역 1년 6월	
				松本勝一(정명서 순사)	징역 1년 6월	
40	朴鳳旭	1936.10.25/ 아편밀수	함북 종성	奥田恒三(三峰駐在所 순사)	(징역 2년)	복심 검 사 구형
				金友吉(三峰駐在所 순사)	(징역 2년)	

* 괄호는 검사의 구형만 확인된 경우임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위 10건의 사례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남 광주 1건을 제외하면 모두 북부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래 <표 6>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신문을 통해 확인된 고문치사 사건 발생 지역 자체가 북부지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재판 결과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1920년대 중반까지는 대부분 실형이 언도되다가, 1930년대로 들어서면 집행유예가 많아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이유이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위 32번 사례에서 보듯이 검사가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⁵⁴⁾

한편 고문치사자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신망받던 인물인 경우,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주민들이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의 집단적인 저항을 하기도 했다. 예컨대 1926년 2월 26일 경남 합천에서 절도혐의자 姜泰亨(38)이 大陽面駐在所의 조선인 순사 金敬熙에게 곤봉으로 무수한 구타를 당해 사망한 일이 벌어지자, 洞民 200여 명이 “양민을 죽인 순사를 내놓으라”며 주재소를 습격했다.⁵⁵⁾ 이렇게 동네 주민들이 나서는 경우 앞서 1장에서 언급했듯이 고문치사자 개인에 대한 도덕적 잣대도 작용했지만, 1920년대 이후 전국 각지에서 대중투쟁이 확산됨에 따라 대중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운동이 활발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

54) 「高等係主任에 三年, 巡査도 六個月 求刑」, 『東亞日報』 1933.7.5.; 「執猶判決에 不服, 檢事가 控訴提起」, 『東亞日報』 1933.7.14.; 「拷問致死馮犯 檢事가 控訴, 京城覆審法院에」, 『朝鮮中央日報』 1933.7.14.

55) 16번 사례. 「巡査가 拷問致死」, 『東亞日報』 1926.3.1.; 「拷問死에 死亡者 屍體解剖에 着手」, 『朝鮮日報』 1926.3.2.; 「良民을 拷問致死, 洞民들은 駐在所를 襲撃」, 『東亞日報』 1926.3.6.; 「拷問致死에 한 巡査, 檢사의 명령으로 압송」, 『朝鮮日報』 1926.3.6. 검사국으로 호송된 김경희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외에도 아들과 남편을 잃은 억울함에 피해자 측에서 조선총독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⁵⁶⁾ 다시금 사회 이슈화되는 등 피해자 측의 대응 양상은 다양했다.

2. 고문치사 사건의 양상과 성격

〈표 1〉을 통해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 40건의 발생 시기와 지역별 현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먼저 발생 시기를 보면, 태형령 폐지 직후인 1920년대 전반기에 15건으로 많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다소 줄어든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1920년대 후반기에도 10건, 1930년대 전반기에도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 외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들도 다수가 있었을 것이다.

〈표 5〉 고문치사 사건의 발생 시기

시기	1920~25년	1926~30년	1931~36년
건수	15건	10건	15건
사례번호	1~15	16~25	26~40

〈표 6〉 고문치사 사건 발생 지역 현황

지역	함경	평안	황해	전라	경상	강원	경기	서울	충청
건수	13	10	4	4	3	2	2	1	1
사례번호	7/15/23/24/ 26/27/30~34/ 39/40	1/2/4~6/ 12/13/22/ 25/38	8/11/ 19/36	9/18/ 28/29	16/17/37	21/35	10/20	3	14

위의 〈표 6〉에 따르면 신문에 보도된 고문치사 사건의 절대다수가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음이 확인된다.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를 합

56) 31번 사례. 「拷問致死 慰籍料를 總督 相對로 提訴」, 『東亞日報』 1933.9.23. 변호사 元澤淵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제소했는데, 이후의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치면 29건으로서 70%를 넘는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한말 이래 민족 주의운동이 활발했고 국내 군자금 모집활동의 거점인 평안도에 집중되었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운동과 혁명적 대중투쟁이 활발했던 함경도에 집중된 점도 흥미롭다. 만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함경도는 1931년 9월 만주침략 이후의 국경지역 경비 및 치안 강화 등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울·경기처럼 세간의 이목을 끄는 지역에서는 일제 경찰이 고문치사 사건 발생에 특히 주의를 기울였음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식민지 조선에서 ‘고문치사 사건’은 정치범이나 사상범만이 아니라 평범한 조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발생했는데, 이는 1910년대에 주로 ‘경범죄’를 중심으로 집행된 「태형령」과 관련이 있었다. 「태형령」의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의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 점은 위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 ‘범죄’ 혐의의 유형을 보면 드러난다.

〈표 7〉 고문치사 피해자의 ‘범죄’ 혐의 유형

유형	항일·저항	절도	각종 법규 위반	강도	미상
건수	15	11	8	4	2
사례번호	1/3/4/6-8/12/14/22/26/ 31/32/34/35/37	9/11/13/16/19/ 21/24/28/29	15/17/18/25/ 27/33/36/40	10/20/23/30	2/5

- * 기사 내용에서 ‘시국 관계’ 혹은 ‘모 사건’으로 칭한 경우는 모두 ‘항일·저항’에 포함
- * ‘강도’의 경우 ‘군자금 모집’ 활동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별도 분류⁵⁷⁾

〈표 7〉을 보면, 총 40건 가운데 일제에 대한 항일저항이나 독립운동 관계가 가장 많아서 15건이며,⁵⁸⁾ 그 외에는 ‘절도죄’가 11건, 각종 법규 위반이 8건, ‘강도죄’가 4건이다. 주로 정치·사상범에 속하는 ‘항일·저

57) 이영배(23번)와 최모(30번)는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도’로 분류된 4건 가운데 현재 대한민국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훈포상을 받은 인물은 없다.

58) 15건의 사례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훈포상을 받은 인물은 이현직(26번), 박휘병(31번), 원구년(34번), 최인근(37번) 등 총 4건이다. 의병항쟁으로 애국장을 받은 김거복(사망일 미상)은 3번과는 동명이인으로 보인다.

항'이나 중범죄에 속하는 '강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절도죄나 범규 위반 등 경범죄에 속하는 사례가 무려 19건으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점은 당시 일제 당국이 보통경찰체제 하의 '문화통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선인 일반을 여전히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사소한 절도사건 혐의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쉽게 매질을 가하고 가혹하게 고문을 자행함으로써, 이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 당시 무고한 '절도 혐의자'를 경찰이 어떻게 취급했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김조호 가족의 사례에서 이미 드러났지만, 아래 사례를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1925년 2월경 평북 定州郡 郭山面의 林岩洞의 李明烈은 자신의 租 2석을 도난당했다면서 曠山주재소에 盜難届을 제출했다. 이후 절도 혐의자로 같은 마을의 金龍守(金鳳益, 22)라는 청년이 체포되어 취조받았는데, 그는 증인으로 金玉贊을 소환해달라며 끝까지 불복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수히 난타하면서 콧구멍에 물을 붓는 등 고문을 자행하였다. 그가 혼절하고 나서야 증인 김옥찬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확실히 '무죄'로 밝혀져, 2월 17일 석방되었다. 김용수는 전신의 打傷으로 피를 토하고 치료를 받다가 마침내 3월 9일 사망했다.

부친 金殷弼이 고문치사를 주장하자, 정주서 사법계 순사와 公醫(철도국 의사)가 부검한 뒤에 사인은 절대 비밀에 부쳤다. 그러자 부친은 3월 11일 신의주지방법원 정주지청 검사국에 관련자를 고소에 抗告를 거듭했으나 계속 기각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신문기자들은 '세간의 중대사건'이라며 입회를 요구했지만, 당국은 절대 비밀이라며 거절했다. 이 사이에 친족 일동은 연서하여 "경찰의 난폭한 사실을 들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평한 처치와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도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고령의 부친 김은필은 5대 독자인 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고소에 항고를 거듭했으며, 시신은 일단 1개월간 斂置했다가 사건이 해결된 후 매장하겠다고 했다.⁵⁹⁾

59) 「오호! 5대 독자의 최후비명, 그 아버지는 검사국에 고소를 제기」, 『每日申報』 1925.3.17.; 「警察의 亂暴을 擧하여 道當국에 進呈, 5대 독자 고문치사사건으로」, 『每日申報』 1925.4.8.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1년 반 뒤에 다시 한번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다. 김용수의 사인은 1년이 넘도록 비밀로 남았고 고소 사건 역시 지속되다 보니, 그의 시신도 매장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경찰은 시신을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내다 버려 반 년가량 유기되었다. 이로 인해 얼토당토않게 부친 김은필(77세)이 ‘시체유기죄’로 검거되었다. 부임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주서장은 자신을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다. 결국 부친은 1926년 11월 22일 정주지청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언도받았다. 그리고 김용수(김봉익)의 시신은 사망한 지 거의 2년 뒤인 1927년 1월경 경찰이 매장했다고 한다. 5대 독자인 아들은 절도범으로 몰려 무고하게 고문치사를 당하고, 부친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다 억울하게 죄인까지 되어 원한에 사무쳐 통곡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⁶⁰⁾

이처럼 김용수의 절도죄는 ‘무죄’였고, 앞서 살펴본 별교서 사건의 김조호 일가 5명의 절도죄 역시 ‘무죄’였는데, 이들 모두가 석방 직후 사망하였다. 당시 경찰이 ‘절도 혐의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계속 부인하는 경우 특히 가혹하게 다뤘던 것 같다. 말하자면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가난하고 무지하게 보이는 ‘잡뽕’ 정도의 조선인에 대해서는 ‘인간’ 이하로 마치 짐승처럼 취급했던 것이다. 사소한 법령 위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醫生 허가를 받지 않고 진료했다거나, 도박장을 제공했다거나, 모르핀 투여 혐의 또는 「아편령」 위반, 사문서 위조, 심지어 그냥 불량자의 모습으로 거리를 활보했다는⁶¹⁾ 이유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고문을 가했다.

근대가 시작되는 18세기 중후반에 이미 베카리아는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절도죄에 대한 형벌은 금전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⁶²⁾ 말하자면 강도 같은 강력범죄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절도범은 가볍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왜 당시 일제 당국은 조선인

60) 「拷問致死된 屍體를 一年半이나 市街에 放棄」, 『東亞日報』 1926.9.7.; 「無罪한 子息 일코 遺屍 罪로 受刑」, 『東亞日報』 1926.12.9.; 「地方短評」, 『東亞日報』 1927.1.22.

61) 차례로 위의 15번, 17번, 25번, 33번, 36번, 18번 참조.

62) 체사레 베카리아(김용준 옮김), 앞의 책, 2022, 98쪽.

‘절도범’에 대해 이렇게 가혹하게 취급했을까? 당시 일제 당국도 경찰관들을 교육하면서 “특정 동기를 범죄의 성립 요건으로 삼는” ‘목적죄’와 달리 절도죄는 동기 여하를 따지지 않고 적용하는 ‘일반적인 범죄’라고 했다.⁶³⁾ 물론 절도죄의 경우도 “사회 국가 이익을 위해 이타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절도”, 즉 ‘정치적 동기’로 일어나면 정치범죄나 사상범죄가 된다고도 했다.⁶⁴⁾ 그렇다면 다수의 ‘비국민’으로 구성된 조선인의 경우, 절도사건에서도 무조건 그 이면에 정치적 동기와 같은 목적성이 있음을 전제로 심문했기 때문일까?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그들을 ‘가난하고 게으르고 무지하다’고 보면서 조선인 일반은 인간 이하로 업신여기며 취급해도 된다고 여겼던, 일본인 일반의 잘못된 인간관 자체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대 언론에서 “人權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경관이 많으므로”⁶⁵⁾라는 언급이 많은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속적이고 빈번한 고문치사의 발생이라는 현상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지 못한 채 군국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 의식과 폭력성 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전체 일제강점기에서 그나마 조선인의 언론이 존재했던 ‘문화통치기’에 ‘보통경찰’에 의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문, 특히 ‘고문치사’는 현존 체

63) 古田正武, 『治安維持法』(경찰교양자료 제1편), 경찰강습소학우회, 1925; 홍선영·윤소영·박미경·복보경, 『사상통제(1) - 사상통제 관련 법규와 통제 주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340-341쪽.

64) 石原雅二郎, 『思想警察概論』, 松華堂書店, 1930(홍선영 외, 위의 책, 2021, 454쪽).

65) 「時代錯誤의 拷問事件, 答刑의 舊制를 依然準用?」, 『朝鮮日報』 1921.9.29.

제에 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의 폭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문화통치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시기는 3.1운동이라는 근대적인 민족운동을 거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경험하고 그나마 열린 공간이 확보된 속에서 조선인도 언론 등을 통해 극단화된 국가 폭력을 공유하고 여론화할 수 있던 시기였다. ‘문화통치’로의 전환의 상징이 ‘笞刑 제도의 폐지’로 선전되던 상황에서 고문치사 사건의 빈발은 여론의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태형이란 유죄가 확정된 후 가해지는 형벌의 한 형태였지만, 이의 금지는 자연스럽게 심문 과정에서 고문의 금지로 받아들여졌다. 1912년 부활된 무단통치기의 「조선태형령」은 주로 ‘경범죄’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1920년 「태형령」 폐지 이후 ‘문화통치기’의 고문 과정으로도 이어졌다. 다만, 앞 시기에는 고문치사를 당한 인물에 대한 도덕 기준에 여론이 좌우되는 경향이 컸던 반면, 3.1운동 이후에는 생명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에 기초하는 측면이 컸다.

‘문화통치’ 아래서 빈번하게 발생한 고문치사 사건은 일제 당국으로 서도 큰 고민거리였다. 조선인 사회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일본인 판검사,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 회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여론이 높아져 갔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1920년대 중반 이래 조선사회 내에서 대중투쟁과 조직운동이 확산되고 조선인 일반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현행 법률로써 고문을 嚴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본문에서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확인된 ‘문화통치기’의 ‘고문치사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고소(피해자측) / 탄원서 제출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문치사자의 사망 장소는 인치 도중 또는 방면 후 자택이나 병원도 있지만, 경찰서 내가 26건으로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문치사자를 연령별로 보면 20~30대의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발생 시기는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사건의 발생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황해도와 강원도를 포함하면 70%가 넘는다. 1920년대 전반기에는 한말 이래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했던 평안도에서,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운동과 혁명적 대중투쟁이 활발했던 함경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글 신문을 중심으로 한 당대 언론에서는 비판 여론을 높여 갔다.

고문치사로 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피해자 유족이 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를 제기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를 ‘瀆職罪, 상해치사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 명백히 확인된 사례는 22건 내외로서 55%를 상회한다. 명백히 가해자 처벌, 즉 휴직, 감봉, 전근, 파면, 恩給 취소, 기소 등이 확인된 사례는 재판 결과 징역 또는 집행유예가 언도된 사례 10건을 포함하여 15건이다. 앞서 고문치사 사건 발생 지역이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던 만큼, 10건의 재판 사례 역시 한두 건을 제외하면 모두 북부지역에 해당된다.

식민지 조선에서 ‘고문치사 사건’은 정치범이나 사상범만이 아니라 평범한 조선인 모두를 대상으로 발생했다. 「태형령」의 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 이어졌다. 이는 총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 ‘범죄’ 혐의의 유형에서 잘 드러난다. 항일운동에 참여한 정치·사상범, 중범죄인 ‘강도죄’를 제외한 일반 절도죄나 법규 위반 등이 무려 19건으로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 점은 당시 일제 당국이 ‘문화통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조선인 일반을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소한 절도사건 혐의자는 인간 이하로 취급하여 오히려 더 쉽게 매질을 가하고 가혹하게 고문을 자행했던 것이다.

이렇게 ‘문화통치기’에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쌓지 못한 채 군국주의적 성격을 띠면서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

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 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 의식과 폭력성 등을 잘 보여준다.

| 참고문헌 |

1. 원전류

『東亞日報』

『毎日申報』

『時代日報』

『朝鮮日報』

『朝鮮中央日報』

『中央日報』

「不逞鮮人傷害致死의 件 報告」, 1919.5.30.,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한국사데이터베이스)

「守備隊長 不逞鮮人 斬殺에 관한 건」, 1919.6.2.,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1)』
古田正武, 『治安維持法』, 경찰강습소학우회, 1925.

石原雅二郎, 『思想警察概論』, 松華堂書店, 1930.

小松博美, 「拷問と自白」, 『警察彙報』 309, 1932.1.

홍선영·윤소영·박미경·복보경, 『사상통제(1) - 사상통제 관련 법규와 통제 주제』, 동북아역사재단, 2021.

2. 저서·논문류(가나다순)

〈저서류〉

마쓰다 토시히코, 이종민·이형식·김현 옮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2020.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22.(개정 2판 4쇄)

심희기, 『한국법제사 강의』, 삼영사, 1997.

윤경로,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한성대학교출판부, 2012.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볼테르 해설, 김용준 옮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2022.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논문류〉

김국화,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 성균관대 박사

학위논문, 2020.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手塚豊, 「明治初年の拷問制度:その廢止過程の一研究」, 『法學研究:法律・政治・社會』 25, 慶應義塾大學 法學研究會, 1952.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 현실』 53, 한국역사연구회, 2004.

오항녕, 「조선시대 추안(推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中國語文論譯總刊』 3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3.

윤민재, 「한국의 의문사 현황과 해결 방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치사회학적 해법 모색」, 『민주평화연구』 3권 1호,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 2020.

임상혁, 「일제강점기 사법관료에 대한 일연구 - 검사 최대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조운선, 「영조 6년(庚戌年) 謀叛 사건의 내용과 그 성격」, 『朝鮮時代史學報』 42, 朝鮮時代史學會, 2007.

조운선, 「英祖代 남형·혹형 폐지 과정에 실패와 欽恤策에 대한 평가」, 『朝鮮時代史 學報』 48, 朝鮮時代史學會, 2009.

한인섭, 「이인 변호사의 항일 변론 투쟁과 수난」, 『애산학보』 44, 애산학회, 2017.

Torture homicide cases under Japanese ‘Cultural Rule’ seen through newspaper articles (1920~1936)

Byun, Eun-Jin
| Jeonju University

This article reviews the overall status and character of the ‘Torture homicide’ committed by the ‘ordinary police’ in the Japanese ‘cultural rule’. In general, torture, especially ‘torture homicide’, often occurs to ‘political prisoners’ or ‘thought criminals’ who strongly resisted the existing system. However, it is characterized by the possibility that any ordinary Korean could be tortured and kill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is because that led to the reinforcement of assault and torture during the interrogation process to obtain a confess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Flogging Act. The frequent occurrence of torture homicide caused criticism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olonized Joseon, but torture homicide continued to occur until the mid-1930s. And in the background, there was a limitation of Japan, a late capitalist country that started with a strong militaristic character. Even if the Taisho Democracy expanded after the World War I, it shows the limitations, backwardness, immature human rights awareness and violence of the Japanese general, who were educated and grown under the emperor system ideology.

There are a total of 37 cases of ‘torture homicides’ under ‘cultural rule’

confirmed through newspaper articles (1920.4~1937.6). Looking at the process of handling after the incident through these cases, it is generally shown in the order of 'investigation (the perpetrator's side) → autopsy and delivery of the body / complaint (the victim's side) / submission of a petition → judgment → appeal (both sides) → judgment and disposition'. The age of victims of torture homicide was large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and it occurred overwhelmingly in northern regions such as Hamgyeong-do and Pyeongan-do. Most of the victims applied for an autopsy, but the question was whether they would easily accept the results. In this case, it led to actions such as filing a complaint, submitting a petition, and attacking police substations. Some perpetrators were punished with leave of absence, salary reduction, transfer, dismissal, cancellation of pension, and imprisonment (including suspension of execution). However, in a total of 37 cases, when looking at the type of 'crime' of victims of torture homicide, misdemeanors such as 'theft crime' and violation of laws account for almost a half. In this regard,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Japanese police did not view the general Korean people as free and equal human beings with human rights.

Key words: torture homicide, torture, 'Cultural Rule', Flogging Act, ordinary police, larceny, Japanese Imperialism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7일 투고되고, 2022년 12월 13일 심사 완료되어 2022년 12월 13일 게재 확정됨.